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2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공간정보 분야 학생들의 학구열을 제고하고 수혜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전문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항목을 신설하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 입학한 학생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 운영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공간정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간정보 인재양성사업 관련 평가·심의를 수행하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하여, 당연직 위원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위원 구성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소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평가·심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본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예외적인 사항은 지침, 업무매뉴얼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24년부터 해당 사업의 종료시점이 변경(차년도 2월 → 당해 연도 12월)됨에 따라 사업 정산일정에 대한 내용을 변경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예외사항은 지침, 업무매뉴얼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 나.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장학생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2조제2항)
- 다. '24년부터 사업종료 시점이 변경(차년도 2월 → 당해연도 12월)됨에 따라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정산보고서 제출일을 변경하고, 특성화대학원의 학교지원금 사용내역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일자를 변경(안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 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부재 시 해당 직책의 차상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8조제1항)
- 마. 공간정보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에 세목별 편성한도를 삭제하고, 특성화전문대학에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을 공간정보 인재양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 별표5)

###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 044-201-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 팩스 : 044-201-5540